

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 
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2월 27 일

여 수 시 장 서기명



여수시 조례 제2281호

붙임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보선된”을 “보임 또는 개선(改選)된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한다.
-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위원의 개선)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

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개선은 해당 위원, 해당 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로 행한다. 다만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, 의장은 협의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보선된</u>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<u>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</u></p> <p>② <u>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선임한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③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보임 또는 개선(改選)된</u> ----- -----.</p> <p>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<u>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한다.</u></p> <p>② <u>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</u></p> <p>③ <u>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위원의 개선) ① <u>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</u></p>

경우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개선은 해당 위원, 해당 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로 행한다. 다만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, 의장은 협의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